

“성별분리통계” 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I·SEOUL·U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공개공지 확보에서 해당 용도 비딕면적에 관해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에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공개공지 등의 “확보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위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불임자료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처리공개 내용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서류를 가지고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 (담당 김성화/☎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04/26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403 () 접수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비공개(6)

전자민원처리공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제출하신 처리내역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 민원내용

민원요지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

접수번호 : 1AA-1408-063301

접수일자 : 2014.08.14

질의내용

「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확보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실제면적과 공용면적(승강기, 계단, 복도, 화장실, 기계실 등)이 공용 비율에 따라 포함되고 지하주차장은 제외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02. 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 : 정재형

전화번호 : 044-201-3763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고자 합니다. 답변-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능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능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부설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44-201-3757 정재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